

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인천대학교 학칙」 및 「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」에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결 사유 및 기간) <개정 2024.9.30.> ① 공결 사유 및 기간은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르며,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6., 2016.10.17., 2016.12.30., 2018.3.2., 2019.8.16., 2020.7.3., 2022.11.28., 2023.9.1., 2024.9.30.>

공결 사유		결석 허용 기간
○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		참가 기간
○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※ 제2조제2항1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		해당 기간
○ 경조사로 인한 결석 - 본인 결혼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- 본인 출산 - 배우자 출산 - 배우자 사망 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-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-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		· 7일 · 1일 · 20일 · 5일 · 7일 · 5일 · 3일 · 3일 · 3일
○ 입원 및 치료(진단서 제출, 출석불가기간 명시)		4주 이내
○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(증빙불요)		월 1일
○ 군 제대 복학시 개강 후 2주 이내		해당 기간
○ 학과 주관 교육 실습, 야외 및 외부실습, 졸업시험 (전시 및 공연 포함)		해당 기간
○ 수강신청 과목변경(추가)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※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		해당 기간
○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	취업자	11주
	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·면접 채용 신체검사 등에 응사하는 경우	해당일
○ 산업체 출장(계약학과)		과목별 수업시수의 10% 이내
○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		행사 기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여야 한다.

1. 「예비군법」 및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판정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: 소집(훈련)기간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: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<신설 2019.8.16., 개

정 2024.9.30.>

<항 신설 2019.8.16.> <항 삭제 2024.9.30.>

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공결로 인정되는 경우,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학생이 동원이나 훈련 참여를 이유로 출석, 성적처리 등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. <신설 2023.9.1., 2024.9.30.>

④ 위 공결 사유 등에 따른 출석 인정은 총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제2항의 사유 및 취업 사유의 공결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24.9.30.>

⑤ 계절학기의 경우 공결 인정은 총 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취업 사유로 인한 공결은 인정하지 않는다. <신설 2024.9.30.>

제3조(공결 신청 및 인정) ① 학생은 대학(원)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공결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최종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9.30.>

② 취업 사유로 공결이 인정된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까지 증빙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공결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경우 성적에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.

④ 출석 인정 여부는 국가법령 또는 본교의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.

제4조(결석) <개정 2024.9.30.> ①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, 3회 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하되,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실습 시간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5.11.25.>

② 교과목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출석성적 계산시 실습 2시간 결석은 이론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한다. <신설 2015.11.25.>

제5조(출석부 관리) <개정 2024.9.30.> ①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해당 학과(부)에 제출하고, 학과(부)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.

② 교무처장은 학과(부)에서 보관중인 출석부를 제출받아,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제6조(휴·보강 관리) <개정 2024.9.30.> ①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법정공휴일, 개교기념일, 대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득이 휴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상적인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여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,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15.11.25., 2019.8.16.>

②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, 학과(부)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보강계획서를 승인한 학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시 학장은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실제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기타)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정한다. <신설 2024.9.30.>

부칙 <제179호, 2015.2.24.>

이 지침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6호, 2015.11.25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0호, 2015.12.16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5호, 2016.10.17.>

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8호, 2016.12.30.>

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1호, 2018.3.2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1호, 2019.8.16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8호, 2020.7.3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3호, 2022.11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인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18조(보칙)”을 “제19조(보칙)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58호, 2023.9.1.>

이 지침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6호, 2024.9.30.>

이 지침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서식 삭제 2024.9.30.>